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수도 요금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 나. 안정적 재원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함
- 다.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5% 총 12.5% 인상(안 별표 2, 별표 4)
 -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원/m³당)
- 나.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는 조항 삭제(안 제2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수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2016. 4. 6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관련 별표 2 및 제35조 관련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6. 11월 고지분부터	2017. 11월 고지분부터	2018. 11월 고지분부터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370	380	390	400	410
	21 ~ 30㎥ (2단계)	520	530	540	560	570
	31 ㎥ 이상 (3단계)	870	890	910	940	960
일반용	0 ~ 100㎥ (1단계)	610	630	650	660	680
	101 ~ 300㎥ (2단계)	850	870	890	910	930
	301 ~ 1,000㎥ (3단계)	970	990	1,020	1,040	1,070
	1,001 ~ 2,000㎥ (4단계)	1,130	1,160	1,190	1,220	1,250
	2,001㎥ 이상 (5단계)	1,260	1,290	1,320	1,350	1,380
욕탕용	0 ~ 1,000㎥ (1단계)	1,140	1,170	1,200	1,230	1,260
	1,001 ~ 1,500㎥ (2단계)	1,240	1,270	1,310	1,340	1,370
	1,501 ~ 2,000㎥ (3단계)	1,380	1,420	1,450	1,490	1,520
	2,001㎥ 이상 (4단계)	1,440	1,470	1,510	1,550	1,590
전 용 공업용	계약㎥당	390	400	410	420	430
	초과㎥당	520	530	540	560	57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 금					비 고
	2016. 11월 고지분부터	2017. 11월 고지분부터	2018. 11월 고지분부터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13 mm	1,120	1,150	1,180	1,210	1,240	
20 mm	3,140	3,210	3,290	3,380	3,460	
25 mm	5,040	5,160	5,290	5,420	5,560	
32 mm	8,950	9,180	9,400	9,640	9,880	
40 mm	15,100	15,480	15,860	16,260	16,670	
50 mm	23,140	23,720	24,310	24,920	25,540	
80 mm	64,440	66,050	67,700	69,390	71,130	
100 mm	95,800	98,190	100,650	103,160	105,740	
150 mm	208,540	213,750	219,090	224,570	230,190	
200 mm	296,490	303,900	311,490	319,280	327,260	
250 mm	400,150	410,160	420,410	430,920	441,700	
300 mm	481,720	493,750	506,100	518,750	531,720	
350 mm	596,420	611,340	626,590	642,250	658,340	
400 mm	659,480	675,980	692,880	710,190	727,940	
500 mm	848,730	869,950	891,700	913,980	936,840	
600 mm	1,376,340	1,410,750	1,446,000	1,482,170	1,519,170	
800 mm이상	1,536,920	1,575,340	1,614,670	1,655,090	1,696,42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4항을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8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 대책임을 진다.</u>	<u><삭 제></u>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 원)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계별	요금	업종별	단계별	요금				
					'06년 11월 고지분 부터	'07년 11월 고지분 부터	'08년 11월 고지분 부터	'09년 11월 고지분 부터	'20년 11월 고지분 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360	가정용	0 ~ 20㎥ (1단계)	370	380	390	400	410
	21 ~ 30㎥ (2단계)	510		21 ~ 30㎥ (2단계)	520	530	540	560	570
	31 ㎥ 이상 (3단계)	860		31 ㎥ 이상 (3단계)	870	890	910	940	960
일반용	0 ~ 100㎥ (1단계)	600	일반용	0 ~ 100㎥ (1단계)	610	630	650	660	680
	101 ~ 300㎥ (2단계)	830		101 ~ 300㎥ (2단계)	850	870	890	910	930
	301 ~ 1,000㎥ (3단계)	950		301 ~ 1,000㎥ (3단계)	970	990	1,020	1,040	1,070
	1,001 ~ 2,000㎥ (4단계)	1,110		1,001 ~ 2,000㎥ (4단계)	1,130	1,160	1,190	1,220	1,250
	2,001㎥ 이상 (5단계)	1,230		2,001㎥ 이상 (5단계)	1,260	1,290	1,320	1,350	1,380
욕탕용	0 ~ 1,000㎥ (1단계)	1,110	욕탕용	0 ~ 1,000㎥ (1단계)	1,140	1,170	1,200	1,230	1,260
	1,001 ~ 1,500㎥ (2단계)	1,210		1,001 ~ 1,500㎥ (2단계)	1,240	1,270	1,310	1,340	1,370
	1,501 ~ 2,000㎥ (3단계)	1,340		1,501 ~ 2,000㎥ (3단계)	1,380	1,420	1,450	1,490	1,520
	2,001㎥ 이상 (4단계)	1,400		2,001㎥ 이상 (4단계)	1,440	1,470	1,510	1,550	1,590
전 용 공업용	계약㎥ 당	380	전 용 공업용	계약㎥ 당	390	400	410	420	430
	초과㎥ 당	510		초과㎥ 당	520	530	540	560	57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5조 관련) [단위 : 원]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금	구경별	요 금				
			2016. 11월 고지분부터	2017. 11월 고지분부터	2018. 11월 고지분부터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13 mm	<u>1,090</u>	13 mm	<u>1,120</u>	<u>1,150</u>	<u>1,180</u>	<u>1,210</u>	<u>1,240</u>
20 mm	<u>3,050</u>	20 mm	<u>3,140</u>	<u>3,210</u>	<u>3,290</u>	<u>3,380</u>	<u>3,460</u>
25 mm	<u>4,890</u>	25 mm	<u>5,040</u>	<u>5,160</u>	<u>5,290</u>	<u>5,420</u>	<u>5,560</u>
32 mm	<u>8,720</u>	32 mm	<u>8,950</u>	<u>9,180</u>	<u>9,400</u>	<u>9,640</u>	<u>9,880</u>
40 mm	<u>14,730</u>	40 mm	<u>15,100</u>	<u>15,480</u>	<u>15,860</u>	<u>16,260</u>	<u>16,670</u>
50 mm	<u>22,590</u>	50 mm	<u>23,140</u>	<u>23,720</u>	<u>24,310</u>	<u>24,920</u>	<u>25,540</u>
80 mm	<u>62,810</u>	80 mm	<u>64,440</u>	<u>66,050</u>	<u>67,700</u>	<u>69,390</u>	<u>71,130</u>
100 mm	<u>93,350</u>	100 mm	<u>95,800</u>	<u>98,190</u>	<u>100,650</u>	<u>103,160</u>	<u>105,740</u>
150 mm	<u>203,200</u>	150 mm	<u>208,540</u>	<u>213,750</u>	<u>219,090</u>	<u>224,570</u>	<u>230,190</u>
200 mm	<u>288,740</u>	200 mm	<u>296,490</u>	<u>303,900</u>	<u>311,490</u>	<u>319,280</u>	<u>327,260</u>
250 mm	<u>389,390</u>	250 mm	<u>400,150</u>	<u>410,160</u>	<u>420,410</u>	<u>430,920</u>	<u>441,700</u>
300 mm	<u>469,730</u>	300 mm	<u>481,720</u>	<u>493,750</u>	<u>506,100</u>	<u>518,750</u>	<u>531,720</u>
350 mm	<u>591,600</u>	350 mm	<u>596,420</u>	<u>611,340</u>	<u>626,590</u>	<u>642,250</u>	<u>658,340</u>
400 mm	<u>643,660</u>	400 mm	<u>659,480</u>	<u>675,980</u>	<u>692,880</u>	<u>710,190</u>	<u>727,940</u>
500 mm	<u>821,800</u>	500 mm	<u>848,730</u>	<u>869,950</u>	<u>891,700</u>	<u>913,980</u>	<u>936,840</u>
600 mm	<u>1,343,150</u>	600 mm	<u>1,376,340</u>	<u>1,410,750</u>	<u>1,446,000</u>	<u>1,482,170</u>	<u>1,519,170</u>
800 mm이상	<u>1,492,810</u>	800 mm이상	<u>1,536,920</u>	<u>1,575,340</u>	<u>1,614,670</u>	<u>1,655,090</u>	<u>1,696,420</u>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 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 례」 제35조제4항을 적용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 2.29>

소관 실 · 과		업 무 과
입 안 자	과 장	확 인 태
	담 당	나 동 식
	담 당 자	이 상 두 (480-4432)